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유아교육 교무·학사·학교행정·일반행정 전주기의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「행복한 생애 처음 학교」를 지원하고, 유치원 입학(방과후 과정 등)을 위한 맞벌이 학부모 편의성 제공을 위한 부처간 “행정정보 공동이용”과 “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”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,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이 필요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(안 제32조의4 개정 및 제1호제2호제3호 신설)
- 나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(안 제34조의2 제1항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규제심사 예정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4 중 “법 제24조제2항”을 “법 제6조의2제1항·제2항, 제11조, 제13조제1항 제2항, 제14조, 제15조, 제19조의2, 제20조, 제22조, 제24조제2항, 제25조, 제27조”로, “비용을”을 “업무를”로, “필요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등·초본
-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
- 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

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,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11조에 따른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무
- 6.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에 관한 사무
- 7.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 등에 관한 사무
- 8. 법 제19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
- 10. 법 제20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에 따른 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
- 12.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
- 13.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, 제53조의2, 제 54조, 제54조의4에 따른 교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32조의4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(제34조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.	제32조의4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- ----- ----- -----은 법 제6조의2제1항·제2항, 제8조, 제8조의2, 제11조, 제13조제1항, 제14조, 제15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20조, 제22조, 제24조제2항, 제25조, 제27조에 따른 유아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<신설>	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·초본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
제3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(제34조 또는 이 영 제7조의4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	<좌동>

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
1.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.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 2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	1. (현행과 같음) 9. <중전의 제1호의2에서 이동> 11. <중전의 제2호에서 이동>
<신설>	2.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3.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4. 법 제11조에 따른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무 5.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무 6.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에 관한 사무 7.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 등에 관한 사무 8. 법 제19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10. 법 제20조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.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3. 사립학교법 제53조, 제53조의2, 제54조, 제54조의4에 따른 교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유아교육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695